

조직개편에 따른 서울특별시 교육·학예에 관한 조례 일괄정비 조례안 심사보고서

의안 번호	1233
----------	------

2023년 9월 12일
교육위원회

I. 심사경과

-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23년 8월 14일, 서울특별시교육감
- 회부일자 : 2023년 8월 21일
- 상정일자 : 제320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4차 교육위원회
(2023년 9월 12일 상정, 원안가결)

II. 제안설명의 요지(제안설명자 : 오성배 기획조정실장)

1. 제안이유

- 서울특별시 교육·학예에 관한 조례에서 2023. 7월 조직개편으로 인한 부서명칭 변경 등의 조문 내용을 일괄 정비하여 법령 적합성을 확보함으로써 자치법규의 접근성을 개선하고, 이를 통하여 시민의 권익증진에 기여

2. 주요내용

- 2023. 7. 1. 조직개편에 따른 서울특별시 교육·학예에 관한 조례의 부서 명칭 등 일괄정비(안 제2조~제4조)

Ⅲ. 검토 의견(수석전문위원 김창범)

1. 제안경위 및 주요내용

- 동 조례안은 2023년 8월 14일 서울특별시교육감에 의해 의안번호 제1233호로 제출되어 2023년 8월 21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.
- 동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교육청의 조직개편에 따른 사항을 교육·학예에 관한 조례에 반영하고자 제출된 것입니다.

2. 주요 검토의견

- 동 일괄정비 조례안은 총 4개 조문으로, 안 제2조는 「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 중 ‘교육행정국장’을 ‘안전총괄담당관’으로, 안 제3조는 「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체육 진흥 조례」 중 ‘체육건강문화예술과장’을 ‘체육건강예술교육과장’으로, 안 제4조는 「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 기금 설치·운용 조례」 중 ‘교육재정과장’을 ‘청사이전추진단장’으로, ‘재산관리담당사무관’을 ‘청사이전기획담당사무관’으로 각각 변경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.
- 이처럼 동 일괄정비 조례안은 지난 제318회 서울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(2023.5.3.) 「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에 따른 서울시교육청의 조직개편 사항의 후속조치로 이루어진 것입니다.
- 교육청이 이미 개정된 조례를 바탕으로 변경된 부서명칭 등을 각각의 조례에 신속하게 일괄 반영한 것은 자치법규의 법적안정성과 시

민 편의성 측면에서 타당한 것으로 생각되고, 별도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.

IV. 질의 및 답변요지 : 없음

V. 토론요지 : 없음

VI. 수정안의 요지 : 없음

VII. 심사결과 : 원안가결(재석의원 전원 찬성)

VIII. 소수의견 요지 : 없음

IX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

조직개편에 따른 서울특별시 교육·학예에 관한 조례 일괄정비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교육·학예에 관한 조례에 대한 일괄정비를 통하여 법령 적합성을 확보함으로써 자치법규의 접근성을 개선하고, 이를 통하여 시민의 권익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안전공제및사고예방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개정)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안전공제및사고예방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제3항제1호 중 “교육행정국장”을 “안전총괄담당관”으로 한다.

제3조(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체육 진흥 조례의 개정)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체육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2조제2항 중 “체육건강문화예술과장”을 “체육건강예술교육과장”으로 한다.

제19조제2항 후단 중 “체육건강문화예술과장”을 “체육건강예술교육과장”으로 한다.

제4조(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 기금 설치·운용 조례의 개정)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 기금 설치·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제1항제2호 중 “교육재정과장”을 “청사이전추진단장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 중 “재산관리담당사무관”을 “청사이전기획담당사무관”으

로 한다.

제10조제1항제2호 중 “재산관리담당사무관” 을 “청사이전기획담당사무관” 으로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